

대구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1가합208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4. 9 선고 2023나1192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1가합208578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피고1.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2.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임종규

3.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22. 11. 28.

판결 선고 2023. 2. 13.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대구 동구 B 유지 1,038m²에 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0. 3. 30. 접수 제1479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9. 6. 22. 접수 제54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동구 B 유지 1,038m²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이 원고 및 같은 목록 순번 1, 2, 4, 5, 6 '상속인' 기재 각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36. 3. 4.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망 D의 자녀 중 1인이다.
- 나. 피고 대구광역시는 1970. 3. 20. 대구 동구 B 유지 1,03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1)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1989.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5. 1.자 인계인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정 또는 상환완료 등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

전전상속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 및 같은 목록 순번 1, 2, 4, 5, 6 '상속인' 기재 각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게 되었다.

피고 대구광역시와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저수지의 하상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적법한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 소유자로서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하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이 원고 및 위 상속인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 대구광역시와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 대구광역시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인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소와 병합하여 제기한 원고는 피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권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원고 주장의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사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이 사정 또는 상환완료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아들인 D이 1955. 12. 8.경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7, 10, 1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중 소유자란에 한자로 'E'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E'가 망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위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기재된 'E'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 생년월일의 기재가 없다. 원고는 망인의 주소와 이 사건 토지 소재지가 동일하여 그 기재가 생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본적 겸 사망 당시 주소는 '경북 달성군 F2)'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 구 토지대장은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 형제 및 친족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망인이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7, 10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 주변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등기명의인들이 매매 또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그중 사정된 토지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연이은 대구 동구 I 유지 1498㎡의 소유자인 J과 망인 사이에는 아무런 신분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다.

대구 동구 K 유지 985㎡ ²	D(망인의 아들)	1967. 11. 3. 상환완료
L 유지 605㎡ ²	M(망인의 남동생)	1934. 4. 4. 매매
N 유지 602㎡ ²	O3) 망인의 제적등본(갑제2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자신의 6촌형이라고 주장한다.	1962. 12. 25. 상환완료
P 유지 1355㎡ ²	Q4) 망인의 제적등본(갑제2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망인의 친족이라고 주장한다.	1939. 3. 15. 매매
R 유지 674㎡ ²	S(망인의 남동생)	1931. 5. 6. 매매

다) 원고는, 근거 법령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망인이 상환완료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1936. 3. 4. 사망한 망인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예컨대 국가의 농지분배 및 수분배자들의 상황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기된 것)은 망인이 사망한 1936. 3. 4. 이후에야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라) 설령 망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인들은 민법 시행일(1960. 1. 1.) 이후 6년 이내에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79 판결 참조).

2)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참조), 설령 피고 대구광역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 대구광역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동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엄성환

판사박경모

판사김은혜

별지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답(畓)'으로 되어 있었다가 1970. 8. 29. '유지(溜地)'로 지목변경되었다.

2) 갑 제12호증의 2(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가 'B 답 314평'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위 'G동'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H동'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도 망인의 본적 및 사망 당시 주소와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은 일치하지 않는다.

3) 망인의 제적등본(갑제2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자신의 6촌형이라고 주장한다.

4) 망인의 제적등본(갑제2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망인의 친족이라고 주장한다.